

의안번호	제216호
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
2023. 11. 17.

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	출	자
예	산	군
수		

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16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17.

제출자 : 예산군수

1. 제안이유

- 예산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주요 시책을 실행하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 직위명 현행화 및 구성 변경(안 제4조 제3항)

현행	개정
4명	2명
군 체육업무담당 과장	교육체육과장
군 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과장	현행 유지
군 체육회 사무국장	삭제
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	삭제

- 나. 체육진흥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근거조항 신설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, 제18조, 제10조, 「근로기준법」 제23조, 제24조

【붙임 1】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
2) 입법예고: 2023. 10. 27. ~ 11. 15. [20일간]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【붙임 2】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.

가. 교육체육과장

제9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0조로 하며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실무협의회)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.

1. 당연직

가. 군 체육회 사무국장

나.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

다. 군 교육지원청 체육담당 팀장

라. 교육체육과 체육지원팀장, 체육시설팀장

2. 위촉직

가. 학교체육 지도자 등 체육관련 종사자 중 군 체육회장 또는 교육지원청장이 추천이 추천

나. 장애인체육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군 장애인체육회장이

추천

다.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관심과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 중 군수가

추천

3.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협약한다

가.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

나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<u>당연직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군 체육업무담당과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군 체육회 사무국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교육체육과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(실무협의회)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당연직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군 체육회 사무국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군 교육지원청 체육담당팀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교육체육과 체육지원팀장, 체육시설팀장</u></p> <p>2. <u>위촉직</u></p>

제10조 ~ 제19조 (생략)

가. 학교체육 지도자 등 체육
관련 종사자 중 군 체육회
장 또는 교육지원청장이
추천이 추천

나. 장애인체육관련 사회복지
시설 종사자 중 군 장애인
체육회장이 추천

다.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관
심과 실무 경험이 많은 사
람 중 군수가 추천

3.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을 검토·협의한다

가.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
협의 및 조정

나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
실무협의회에 검토를 요구
한 사항

제11조 ~ 제20조 (현행 제10조부
터 제19조까지와 같음)

【붙임 1】 관계법령

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·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

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도·감독한다.

□ 「근로기준법」

제23조(해고 등의 제한)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(懲罰)(이하 “부당해고 등”이라 한다)을 하지 못한다.

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(産前)·산후(産後)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4조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)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·인수·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“근로자대표”라 한다)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

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6. 4.>

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【붙임 2】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비용 발생이 연간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
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예산군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장 강민수

담당자 현황 【행정복지국장 정윤교, 교육체육과장 강민수, 체육지원팀장 김영국, 담당자 이찬호 ☎339-7462】